

운영규정의 개요

■ 장기요양 인정의 신청 자격 및 절차

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환(치매, 뇌혈관성 질환, 파킨슨 등) 이 있는 분은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 인정신청을 하여,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을 받아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받고자 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선택 하시면 됩니다.

■ 기관 이용정원 (2026.01월 기준)

이용정원	현재 이용 인원				비고
	남성	여성	인지지원추가	합계	
19명	8	11		19	

■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시설물 사용상 주의사항

- 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 동안 유효합니다. 다만, 법령 및 고시변경 등에 의하여 이용계약에 관한 본인부담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 - 단, 기관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(또는 보호자)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, 이용자(또는 보호자)는 이후 15일 이내에 회신하고, 제 계약시 새로운 인정기간에 따라 계약을 해야 합니다.
 - 본 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.
- 기관과 보호자 그리고 이용자는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.
 - 이용자의 의무 : 1. 월 이용료의 성실 납부 2. 기관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협조
3. 기관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 금지 등 청결유지 4. 개인정보 변동 시 즉시 통보
 - 기관의 의무 : 1. 이용자의 건강관리 협조 2. 이용자의 신변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
3. 장기요양급여 제공 서비스 제공 및 생활 상담 · 조언 및 생활 편의 제공
4. 건물 및 부대시설의 위생 및 유지 관리 5. 이용자의 안락한 노후생활과 관련한 협조
 - 보호자의 의무 : 1.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·정보 제공 2.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 비용 부담
3. 개인정보 등 관련 사항 변경시 즉시 통보 4. 기타 기관 생활 및 보호자로서의 의무이행
5. 이용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제공자에게 통보
- 이용자는 아래의 사항이 발생 시 계약기간 중이라도 퇴소할 수 있습니다.
 - 본인이나 가족이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
 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타 이용자에게 감염 전파의 위험이 있는 경우
 - 타 이용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경우
 - 이용료를 6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(단, 제공자는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)
- 이용자는 기관의 시설물에 대하여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, 이용자 과실로 인한 시설물 파손에 대해서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배상하여야 한다.

■ 기타정보(필요시 의료시설 이용 절차 등)

- 요양보호사,간호(조무)사 등의 과실로 어르신 케어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, 입소자들을 위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및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,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.
- 이용인이 질병이나 부상 또는 의사의 진단에 의해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방에 따라 시설장의 책임하에 실시하고, 중환자 또는 수술을 필요로 하는 질환일 경우 이용인 및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보호자의 책임하에 기관의 협약병원 또는 개인의 선택에 의한 기타 의료 센터에서 치료를 받습니다.
- 기관은 이용자의 응급·위급 상황 발생 시 협약병원 또는 이용인(또는 보호자)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